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제주도 어미지식물원은 서울시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구상권차원에서 당시 소유자였던 계우개발로부터 인수한 재산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6조의 이용제한 규정은 이용객들이 평온(平穩)한 상태에서 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연적인 의미와 사전예방적인 의미가 담긴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2호를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한 것은 공공질서를 이지럽혀서 식물원관람객을 불편하게 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용제한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어미지운영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어미지운영에관한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3
----------	-----

2001년 3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2001년3월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윤 응 섭)

가. 제안이유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의 분쟁 및 교원예우, 교권보호·중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권고함.
-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필요시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함.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 공제회 지원 신청 결정,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을 권고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동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안됨.
- 동 조례가 제안된 배경을 보면, 현재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교원 개인이 사회적 파장,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성이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학교 내외의 교권 보호장치의 미흡으로 교원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교육활동과 관련

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학교내에 자율적,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전년도에,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건수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경우는 총 2,357건에 12억 7천 3백만원이며,

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2건임.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대부분 교육감이 되나 그 진행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의 어려움이 매우 크며, 교직원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소송 수행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됨.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동 위원회가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설치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동 조례는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교육부에서 시달해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위원회 성격상 위원들이 분쟁 조정과정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비밀 등을 알게 된 경우가 있는바, 안 제5조의 위원회 의무 중 동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가. 수정이유 :
 - 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 엄수 조항을 신설

나. 주요골자 :

- 위원수 5명을 7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의료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3조제2항)
- 위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금지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